4. 적대행위 발생시 한국의 재판권은 중지된다

본 협정 제22조 11항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재판권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은 즉시 그 적용이 정지되고, 합중국 당사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합의의사록 제22조 2항 (나)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 본 안의 규정은 계엄령 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적대행위 발생이라 함은 한미 양국 중 어느 일방 당사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게 되어 한미 양국이 무력공격을 저지하게 되는 급박한 사태를 가리킨다. 이렇듯 적대행위의 개념은 매우 막연하여 위의 조항은 미군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남북분단으로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적대행위란 해석이 남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적대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바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이 전면적으로 중지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 조항 역시 미군 주둔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주둔이 오로지 이남의 안보를 위해서라는 냉전적 사고, 군작전 지휘권을 미군측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등과 연관이 깊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국에 미군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 주둔하고 있으므로, 평상시가 아닌 적대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한국의 재판권쯤은 얼마든지 무시되어도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에도 적대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다.

<나토협정>에는 적대행위 발생 경우 형사재판권 조항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미일협정>은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방 당사국이 60일 전에 예고함으로써 재판권조항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치할 적당한 규정을 합의하기 위해 즉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필리핀협정>은 전시에 있어서는 미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11]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도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적어도 막연한 적대행위의 개념이 아닌 전면적 전투발생 등으로 요건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자 한국측의 재판권이 전면 중지되었다. 외무부가 밝힌 「미군범죄의 연대별 현황 및 처리과정」에 보면 1980년에는 1,679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다. 단 한 건을 한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였고 나머지 1,678건의 범죄는 모두 미군측에서 관할하였다.

VII. 미군범죄 근절을 위하여

필자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라는 명함을 내밀면 그것을 받아드는 사람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필자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단체이름을 말한 것뿐인데 미군철수는 안 돼, 사람사는 곳에 범죄가 없을 수는 없지, 어머 무서워(미군이 무섭다는 것인지 범죄근절이라는 말이 무섭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한국사람 범죄가 더 많아, 미군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더 문제야 등등 각자 미군에 대한 인상을 답하는 사람이 대

11) 『알기쉬운 한미행정협정 :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6, p. 39.

부분이다. 미군범죄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거나 좋은 일을 한다며 격려해주는 사람도 가끔씩 만나게 된다. 기지 근처 주민들은 진작 이런 곳이 있어야 했다 혹은 신고해봤자 뭐하냐는 상반된 의견을 보인다.

물론 사람사는 곳에서 범죄를 모조리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범죄발생 이후의 해결과정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가해자는 죄에 합당한 처벌을, 피해자는 배상을 정확히 받아야 한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배상은 커녕 치료비부담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해방 이후 10만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10만 명이 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산되었음을 뜻한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 단언하건대 가해자들이 철저히 단죄되고 피해자가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 10만 건이 넘는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군범죄 최소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1.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전면적 개정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그런데 지위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와 배려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타국의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배상의 책임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미군들에게 온갖 특혜를 보장하여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지위협정은 미군피의자 신병인도 시기, 검찰의 상소권, 미군 피의자의 사법적 권리보호 등 몇 가지 부분적 손질이 아닌 협정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한국정부의 적극적 재판권 행사

<표 2>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 현황(1988년 - 1995년 8월)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계
계	1,266	1,117	974	1,041	642	624	710	499	6,873
행사	6	109	9	14	10	21	24	28	94
포기	1,260	1,109	965	1,027	632	603	686	471	6,751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정부는 지위협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등 미군범죄를 방치하여왔다. 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별 고생 안 한다'는 생각을 미군들에게 갖게 하여 수많은 재범자를 양산했다. 적극적인 재판권 행사는 미군범죄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금 정부의 주체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또한 재판권이 미국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철저한 점검체계를 지위협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미군당국에 의해 죄를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군범죄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교통범죄의 빈발은 '관대한 처벌'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

3. 미군범죄 전담 수사기관의 설치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지위협정이라는 특수한 법령이 적용되므로 협정과 영어에 능통해야만 범죄미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군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군주둔 지역에 미군범죄 전담 수사기관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미군 수감시설에 대하여

알려진 바로는 미군을 수감할 수 있는 시설이 천안 소년교도소 20여 개의 감방뿐이다. 이는 일년에 1천여 건씩 발생하는 미군범죄자에 대한 수감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는 "징역형의 집행기간 중 또는 유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의 구금 시설에 유치되고 있는 피구금자와 접견하는 동안 의류, 음식, 침구, 의료 및 치아 치료 등 보조적인 보호와 물건을 공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샤워시설과 조리기구, 텔레비전, 라디오와 카세트, 심지어 컴퓨터 놀이기구까지 갖추어놓은 미군 감옥은 벌을 감내하는 장소라고 보기에 너무나 사치스럽다. 한국의 낙후된 수감시설도 문제지만 호화스런 미군 감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5. 손해배상에 대하여

미군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을 청구하는 창구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미군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각 지방 검찰청에 있는 국가배상심의회에서만 접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두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가까운 의정부 지청을 두고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각 지청에서도 국가배상 청구서류를 접수하여 배상신청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선지급해야 한다. 미군범죄 피해자들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배상절차 때문에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심지어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미군과 관련 있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미군과의 불편한 관계를 염려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을까봐 범죄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때가 많다.

이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위협정 제23조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군당국은 여론의 확대로 인해 정치적 부담이 커질 때 치료비를 선지급한 사례가 있다.

6. 미군 교육강화

미군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다(은혜를 베푼다), 한국을 해방시켜주었다는 등의 생각으로 한국인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군범죄를 일으키는 가장 기본요인이자 출발점이다. 미군당국이 군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힘써야 한다.

7. 비정부단체의 운동에 대한 지원

정부에서 풀어가기 어려운 일들을 비정부단체가 앞서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형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정부가 기존관계의 틀에 얽매여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비정부단체들은 오히려 수월하

게 접근할 수 있다. 미군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적극적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본 오키나와 현청의 직속기구로 구성된 미군기지 대책반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도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VIII. 맺음말

한국 기자가 미국 친구에게 신혼부부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너희 나라는 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 미국 친구는 한국에는 남편한테 매맞고 사는 주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의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여성의 독립심이 높아졌다는 얘기도 된다, 아메리카의 숭고한 가치 중에 하나는 독립이다, 국가나 개인이 독립을 침해받는 것은 정말이지 참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머쓱해진 기자는 잠시 있다가 "그렇게 독립을 중시하는 너희가 남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한국의 군작전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미국 친구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우리가 너희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너희 국민들은 어떻게 그런 굴욕을 참고 있니?"라고 반문했다 한다.

필자는 갑자기 지난해 5월 오키나와 국제회의에서 만난 일본인이 떠올랐다. 필자 앞을 머뭇거리던 오키나와 비정부단체 관계자가 필자에게 한 가지 물어왔다.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관리와 면담할 때 외무성 관리는 "바로 옆 한국도 조용히 있는데 자꾸 일본만 문제삼으면 미일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 조금만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그는 필자에게 한국에선 정말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로 정부에 항의하지 않느냐고 질문해왔다. 일본관리의 말을 확인하고 싶다면서. 필자는 조그만 목소리로 그리 활발하진 않지만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상한(?) 답변을 했다. 그랬더니 그가 다른 질문을 던졌다. 한국은 정말로 기지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않느냐는 물음이었다. 필자는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임대료는 커녕 임대기간 개념마저 없는 한국의 현실을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분단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남들이 당연시하는 일을 우리는 쉽게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

외제사용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자제하여야 한다, 한국의 민족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는 등 외세의 눈치를 한껏 보고 있는 국제금융시대이다.

국제화시대에 민족이라는 말이 진부하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세계화를 아무리 강조한들 주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민족에게 세계화란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음을 IMF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가?

한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과 정부와 언론의 굴욕적 침묵은 미군범죄 피해자들을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몰아넣었고 불행히도 그 고통의 역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반백년이 넘도록 국가안보라는 공룡에 짓눌려 억울하게 살아온 이들의 상처를 이제는 닦아주어야 한다.

미군범죄 근절하자는 말마저 반미로 인식되는 분단의 시대에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전면적 개정은 여러 분야에서 상실한 우리 민족의 주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ㅁ 참고문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소식지』, 1-20호, 1993.12.-1998.2.
『한미행정협정 문제점과 개정방향』,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4.
후지와라 아키라 외 2인, 『일본현대사』, 도서출판 구월, 1993.
최승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서울국제법연구』 별책, 4권 2호, 1997.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1995.
『민족분단과 민중인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8.
『민족의 주인됨을 위하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7.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6.
『외교백서』, 외무부, 1997.
오연호, 『우리 현대사의 숨은 그림찾기』, 월간 말, 1994.
『국방백서』, 1996-1997, 국방부, 1996.
『너희가 물러나야 우리가 산다』, 도서출판 힘, 1991.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96.
강성철, 『주한미군』, 일송정, 1988.
월간 『말』, 1997년 12월.

■■■■■

장 려 상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수경·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실무자

수상소감

먼저 완성도가 부족한 이 논문을 선정해주신 분들과 인권운동사랑방의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권논문상은 그간 인권단체에 몸담고 인권교육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고민이 얼마나 부족했던가를 반성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드문 것이 우리 인권교육의 현실입니다. 몸은 다 자랐는데 인권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나 상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가 그들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려주는 기초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아갈 21세기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쁘디 예쁜 조카의 얼굴을 대할 때면 그 아이가 읽고 있는 그림책 가득히 '권리'를 담아주고 싶습니다.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I. 서 론

1. 문제제기

"인권이 중요한 줄은 알겠지만 너무 포괄적인 문제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많은 줄은 알지만 내가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 듣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상은 본 연구자가 1995년부터 수십 차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해오면서 학생들에게 자주 듣던 소감이다.

우리 사회에는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집단과 그들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 또한 생존권의 불안, 첨예화된 경쟁과 분단에서 오는 억압 등 극단적인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 만약 사회 구성원 대개가 이 곤란한 문제들에 대해 대처할 방법을 모른다면, 인권에 대해 알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알고 행동하는 것이 인권교육이라 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해 친숙하고 그것에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 다른 말로 인권교육이 수행되지 않은 사회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자와 인권 피해자로 넘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 수긍한다 할지라도 '인권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생소한 영역이다. 인권이 생활전반에 관련된 포괄적인 것인 만큼 '무엇'에 대해 '어떻게' 배워서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은 우리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영역이다. 1948년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 모든 개인과 모든 사회조직이 '이 선언에서 보장된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통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는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와 교육기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어느 교육체계 속에서도 이 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시도된 광범위하고 의식적인, 그리고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지만 '인권교육'은 여타 교육영역에 비해 개척이 덜된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인권교육의 도전은 현실의 교육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먼저 직면할 수 있다. 세계시장의 존재 속에서 그것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노동력의 창출은 어느 사회에서나 교육의 당면과제다. '사회와 인류에 대한 헌신, 민주시민의 양성' 등의 수사가 교육의 목표를 장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키우기 위한 과제 수행만으로도 교육현장은 벅차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인권교육은 모호한 필요성만으론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교육이 '국가'에 독점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사상과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기존질서에 대한 비판정신을 내포한 인권교육을 선뜻 받아들일 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인권교육은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모호한 긍정만으론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의 도출이 요구된다.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는 사회 구성원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되어야 하고, 그 가치를 지지하는 지식의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가치를 존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태도형성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학습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와 그 속에서 지지된 인권교육의 개념 및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국내의 인권교육 주창자들은 인권교육을 '정책화할 기회'와 경제 우선에 억압되고 희생될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법 제정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검토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정책에 인권의 개념을 도입할 가능성이 엿보이면서도 국제구제금융 사태로 인한 극단적 사회 분위기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명료화되어야 하고, 정책화를 요구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의 체계를 갖추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인권의 존중을 위한 헌신이라는 기본적 의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주창자들의 적절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도우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권교육의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인권교육의 기원과 정당성, 인권교육의 개념과 실현방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① 인권의 개념화와 규범화를 이룬 국제문서 속에서 인권교육

의 정당성과 개념을 발견하고, ② 선행 연구자들의 인권교육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고, ③ 국내 인권교육의 현황과 장애요소를 살펴보고, ④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권교육의 당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는 ① 그간 국내·외에서 진행된 인권교육의 논의와 실천 노력을 정리·분석한 논문이 국내에 없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 ② 이를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리란 점에 있다.

3. 연구방법과 제한점

본 글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은 내용분석법에 따라 진행된다. 분석대상으로 하는 주요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유엔 및 지역 인권기구의 조약, 선언문 및 보고서
2) 국내·외에서 개발된 인권교재 및 프로그램
3)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외의 논문 및 저서
4) 국내 대학 및 민간단체의 인권교육 관련 활동 소개 및 평가 문건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이 글이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인권교육의 참여자 중의 하나인 교수(teaching)측의 활동만이다. 교육의 당사자라 할 학생과 부모의 욕구와 의견은 빠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II. 인권교육의 개념과 성격

1. 인권교육의 기원

20세기 말 인류가 겪고 있는 엄청난 수준의 폭력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잘된 점을 하나 꼽는다면 국제적 관심과 합의에 기초한 인권의 포괄적인 규범화를 들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그 어떤 때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권리의 목록화'와 '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없었다.

1948년 이후, 유엔과 그 산하기구들, 또한 지역차원의 인권기구들은 끊임없이 인권에 관한 주요기준을 제공해왔다. 인권교육의 정당성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합의 속에 마련된 인권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주요 인권문서 속에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하나의 권리로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문서를 분석함으로써 인권교육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제적인 합의를 거친 최초의 선언인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교육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1]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인권과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선언의 가치를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공포하였으며, 특히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은 이 선

1)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 A(III),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0 December 1948.

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촉진하도록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노력해야 한다"(전문 5문단)고 하였다. 여기서, 인권교육은 국내적, 지역적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모든 개인과 집단의 '의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교육을 하나의 권리로 규정한다. "모든 사람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모든 나라, 인종 또는 종교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적 관계의 증진", 그리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유엔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제26조 1-2항).

'권리'로서의 인권교육은 또한 인류 '공동'의 교육내용이 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세계의 도래는 모든 인류의 최고의 열망으로 공언되어 왔다"(전문 2문단)는 데서 "모든 인류의 최고의 열망"이라는 것과 "인류의 양심의 유린"이라는 표현은 '인권'을 인류 양심의 공동자산이자 공동의 도덕적 정서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류 공동의 보편적인 교육내용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전문 3문단)이라는 데서 인권교육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전제와 탄압"은 다른 말로 하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의 부재 내지는 파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질서의 붕괴와 시민권리의 후퇴를 불러오고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인권과 평화의 보호를 위한 전략적인 도구라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2)]

둘째, 1974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인권교육에 관한 권고안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가 성장할 수 있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950년 결의 314(XI)에서 <세계인권선언>에 관한 교육을 유네스코가 장려하고 촉진할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선언 이후의 인권교육 실천 노력의 상당 부분은 유네스코 체계 안에서 발전되어왔다. 특히 1974년의 『국제이해, 협력 및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에 관한 권고』는 인권교육의 개념을 확장하고 그 내용과 실천방안을 구체화한다.[3)]

이 권고에서 인권교육의 개념은 "개인과 사회집단이 국내 및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능력, 태도, 소질 그리고 지식 전체를 의식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배우는 사회생활의 전체 과정이며, 이 과정은 어떠한 특수한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1-(a)항)이다.[4)]

인권교육의 목적은 "국제이해, 협력 및 평화"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국제이해, 협력 및 평화"는 서로 다른 사회·정치 체계를 가진 민족과 국가간의 우호적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합한 "나눌 수 없는 전체"(an indivisible whole)로서 고려된다(1-(b)항). 이러한 권고의 내용은 "교육의 모든 단계와 형태에 적용되는

2) The 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ARRC), *Human Rights Education : A Survey of Ongoing Initiativ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ailand, 1995, pp. 98-101.

3) UN, *United Nations Ac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ara., 3142-3173, Geneva 1994.

4)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 November 1974.

것"(2항)으로 당사국들은 다음의 내용에 동의하였다(Ⅳ-Ⅴ부).

-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존중심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그러한 정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물질적, 정신적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
- <세계인권선언>의 원칙들이 아동과 청소년, 또는 성인들 모두가 매일 매일의 교육행위 속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원칙임을 보장한다.
- '인권에 관한 실천활동과 원칙 준수'에 관련된 문제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셋째, 1989년 유엔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조약>은 인권교육의 당위성을 밝혀준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도덕적 의무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이나 의무를 구성하지 않는 '권고'가 아니라 그것을 비준한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라는 발전된 형태로 인권교육을 규정했기 때문이다.[5]

이 조약에서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제42조)를 지며, 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유엔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개발"(제29조 1(b)항)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유엔 아동권리조약>은 아동 자신이 자신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과 그 의무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인권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명시하였다.

또한 이 조약은 이행을 위한 기구를 갖추고 있다. 당사국의 조약이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10명의 아동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사국은 이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조약의

5)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4/25,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 November 1989.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대중이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제43조, 제44조 1항).

인권교육의 의무자로 국가를 명시하고, 이행기구를 마련한 점과 아울러 '민간단체의 협력과 의견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약은 인권교육의 실천에 크게 기여한다.

이 조약에는 기초과정에서부터 민간단체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었고, 인권교육 관련 조항인 28, 29, 42조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조항이 민간단체의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그 결과 민간단체를 염두에 두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기구"(제45조)를 조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대상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다른 어떤 기구보다도 민간단체에 개방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6]

넷째,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1993년 "<비엔나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에서 재차 강조되었다.[7] 1968년 테헤란에서 개최된 이래 25년 만에 열린 유엔 차원의 세계인권대회의 결과물인 <비엔나선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권정보의 유포와 인권교육을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국가기구의 중요하고도 건설적인 역할로 확인하였다(Ⅰ부 36문단).
-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74년 유네스코 권고에 명시되었던 인권교육의 목표(인권과 기본적 자유+국제이해, 협력 및 평화)를 재확인하며, "평화, 민주주의, 개발 및 사회정의"를 인권교육의 목표에 포함시켰다(Ⅱ부 D-80).
- 특히, "여성의 인권요구"를 강조하여 특정 성(gender)에 관한 계획과 전략을 발전시킬 것을 인권교육의 사명으로 권고하였다(Ⅱ부 D-81).

6) Sharon Detrick,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pp. 24-25.

7)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einna, 25 June 1993.

▪ 인권교육의 계획을 포괄적인 사회 구성원의 참여과정으로 유도하였다. 즉, 인권교육을 주도하고 지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 각국 정부는 모든 개인과 집단, 민간단체, 국내 기구 및 정부간 조직 등의 지원을 받아 상호 평등한 태도 속에서 인권교육을 촉진해야 하는 것이다(전문 2, 3문단, I부 13문단, II부 D-82).

▪ 인권교육의 기준과 프로그램을 "군대, 법집행요원, 경찰 및 보건전문의 등"과 같은 특수집단에 적용해야 함을 명시한 것(II부 D-82)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다섯째, 인권교육은 유엔총회가 1994년 선포한 <유엔 인권교육 10년>(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cuation)에서 구체적 행동지침으로 발전되었다.[8]

유엔 인권교육 10년은 <비엔나선언>에서 강조된 인권교육 활동의 장려, 촉진 및 집중을 위하여 선포된 것이며, 199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2004년까지 이어진다. 이 10년 동안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 계획지침」에 잘 드러나 있다.[9]

이 계획의 일반원칙은 "인권교육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정부는 "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권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민간단체를 포함한 사회 대다수가 대표되는 것", "사업의 투명성" 그리고 "대중에게 설명할 의무 및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국가행동 계획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된 구체적인 것이다.

8)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No. 49/184, 23 December 1994.

9) UN General Assembly, A/51/506/Add.1., 12 December 1996.

제1단계 :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설립'이며, 그 기능과 작업방식과 일정이 명시되어야만 한다.

제2단계 : 인권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제3단계 :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권교육이 요구되는 집단을 정한다. 여기에는 경찰, 교도관, 판사, 검사, 교사, 사회사업가, 전문의료인,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제4단계 : 인권교육의 포괄적인 전략, 자원 및 평가기제를 개발한다.

제5단계 :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한다.

제6단계 :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수정한다.

이와 같은 행동 프로그램은 유엔총회와 인권위원회가 수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국가행동계획의 개발을 촉구한 것에 부응한 것이다. 이 행동 프로그램의 작성에는 유네스코, 유럽의회 및 인권교육 분야의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10]

이상과 같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주요 인권문서 속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재차 확인되고 강화되어 왔다. 이 속에서 인권교육의 개념은 확장·발전되었고 구체적인 실천지침이 개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인권교육의 개념과 성격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주요 국제인권문서에 나타난 인권과 교육의 개념은 국제 사회가 동의한 인권교육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문서 속에서 확인된 인권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아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데 목

10) UN General Assembly, A/52/469/Add.1. para., 16-63, 20 October 1997.

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의 추구.
-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국가·민족·종교 및 언어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의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증진.

위와 같은 개념에서 볼 때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정보 또는 객관적인 지식을 단순 제공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기술 및 태도의 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변화와 창조를 염두에 둔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스터(Lister)의 분석은 인권교육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인권에 '대한'(about) 교육은 '지식'(knowledge)의 획득과 관련된다. 여기에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여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에 헌신한 사람들과 조직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둘째, 인권을 '위한'(for) 교육은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술'(skill)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다.

셋째, 인권을 '통한'(through) 교육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것의 '가치'(value)를 경험하는 것이다.[11]

같은 맥락에서 유럽의회 장관위원회가 1985년 채택한 「학교에서의 인권에 관한 교수와 학습에 관한 권고」를 참조할 수 있다. 이 권고에

11) Ian Lister,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Strasbourg : Council of Europe, 1984, Amnesty International, *Our World Our Rights*, London, 1996에서 재인용.

는 인권교육의 지식, 기술 및 가치의 형성(내지 태도의 형성)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인권에 대한 지식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인권, 의무 및 책임의 주요범주.
- 인종주의와 성차별을 포함한 불의, 불평등 및 차별의 다양한 형태.
- 역사적이며 또한 지속되고 있는 인권을 위한 투쟁 속의 인물, 운동 및 주요사건(성공과 실패의 사례 모두 포함).
-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선언 및 인권에 관한 조약.

둘째, 인권을 위한 기술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지적기술 : 특히 글로나 말로 표현하는 기술, 경청하고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는 능력.
- 판단과 관련된 기술 : 대중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근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기술, 이것을 분석하여 공정하고 균형잡힌 결론에 도달하는 기술, 편향·편견·고정관념 및 차별에 대해 분별하는 기술.
- 사회적 기술 :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긍정적이고 비억압적인 인간관계 형성하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 해결하기, 책임지기, 결정에 참여하기, 지역 및 국제수준에 존재하는 인권보장기구 이용에 대해 이해하기.

셋째, 인권을 통한 가치면에서는 '참여'의 장려를 강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다양한 견해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토론될 수 있는 학교에서라야 인권의 '가치'가 수용되며 인권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다. 이 권고에서 강조한 '참여'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모두 고려된다. 특히, 참여의 촉진을 위해 민간단체와의 공동작업을 당연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민간단체는 인권과 존엄성을 위한 운동에 대한 직접 경험뿐 아니라 정보와 사례연구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12]

리스터와 유럽의회의 권고안에서 도출된 인권교육의 세 요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첫째, 인권교육의 교과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앞서 제시되었듯이 주요 국제선언 및 인권에 관한 조약, 인권투쟁의 사건·역사·주요인물, 인권침해의 다양한 형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역사, 사회, 과학, 외국어, 수학 등 기존 교과목에 포함될 수 있고 별도의 과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과 계획을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에 등장한 인물, 예문, 사건, 통계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교육의 방법을 시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기된 요점은 인권에 역행하는 방법으로는 인권을 교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환경에 대한 탐색, 예를 들어 학교규율이나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학교 당국과 부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주요 사회 행위자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 인권교육은 반인권적인 사회의 갈등과 모순을 대면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발·군사주의·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 등 인간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때,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대로라면 정의감과 인간애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허용하는 사회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역사인식이 없다면 또한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이 없다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대하긴 어렵다.

12)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No. *R(85)7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f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in Schools*, Strasbourg, 14 May 1985.

이 점에서 인권교육은 탈가치적이고 탈정치적인 도덕교육과 차별화된다. 인권교육은 도덕적·정치적·사회적 및 문화적 문제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권교육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최고 주제는 인권교육의 참여자들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관계 속의 '일상생활'을 '인권의 원칙'에 부합되게 조직하는 것이다.[13]

그러므로 문제는 다시 실천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교육의 세 요소에 부합되는 인권교육을 실천하려 할 때 기존의 '주입'식 방법으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권교육이 당면하는 인권문제들은 한 가지 정답을 가진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견해와 다양한 해결방식의 대결과 타협의 장(場)이다. 이 속에서 인권교육이 옹호하는 가치는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인권교육은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인권교육의 주창자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주요한 활동의 목록은 <표 1>과 같다.[14]

<표 1>에 예시된 유형의 활동들은 철저하게 '학습자' 중심적인 것으로, 자신의 문제에서 시작해 더 넓은 사회로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게끔 계획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우선 인권의 문제를 학습자 자신의 문제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학습자의 경험을 중시하고 존중한다. 둘째,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을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활동중심적'이어야 한다. '활동'은 자신들의 선행 지식과 경험을 표출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각자

13) Dieter Misgeld, "Human Rights and Education : Conclusions from some Latin American Experiences", *Jouranal of Moral Education*, Vol. 23, No.. 3, 1994.

14) <표 1>에 나타난 활동은 유엔기구가 개발한 인권교재 6종, 유럽의 민간단체가 개발한 인권교재 16종, 아시아의 민간단체가 개발한 3종의 인권교재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주요한 인권교육 활동 프로그램

주요한 활동의 목록	활동의 성격
드라마·역할놀이	특정상황 속에서 주어진 서로 다른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유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다.
모의실험	실제생활의 재현이자 모방이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역할의 복잡한 상호연관성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운다. 경쟁이 아니라 우호와 협력을 통한 해결방식을 장려한다.
시·그림·음악 등 예술활동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쉽게 친밀해질 수 있다.
창조적인 글쓰기	자신의 언어로 제기된 문제와 현상에 대한 반발 또는 동질감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일 등 기념일 행사	기념일 행사를 직접 계획·참여함으로써 의의를 되새길 수 있다. 기념일 행사 그 자체가 인권옹호를 위한 연대활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
사례비교와 분석	실제나 가상의 사건 또는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어 토론이 쉬워질 수 있다.
게임	어린 아동일수록 놀이를 통해 흥미가 유지되며, 자연스런 태도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만화·사진 등 시청각자료	현실 속의 상황과 대상을 보여주기에 유용하다.
불평등을 보여주는 도표·통계	학습자 각각의 경험을 객관적인 상황에 대입시킬 수 있다.
계산	인권침해 또는 인권옹호가 가져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낱말 맞추기·연상	있을 법한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집단토론·대표토론	의견의 교환, 다르거나 갈등하는 의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인, 분석과 종합하는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	판단이나 비판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견학	직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가 표출한 지식과 경험은 새로운 문제에 도전받아 재정립될 수 있다. 넷째, 자신을 표현하는 한편 타인의 지식과 경험에도 반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참여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눈 것으론 충분치 않다. 사실과 통계 등 다른 자료와

비교하고 문제화하고 종합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문제의 연관성과 상호영향을 분석적으로 파악해야 한다.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한(about) 것일 뿐 아니라 인권을 위한(for) 교육이며 인권을 통해서만(through) 교육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사람들이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이 존중받고 수호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는 지점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

3. 인권교육의 장애요소

앞서 살펴본 인권을 지지하는 국제적 약속은 "실천이 유보된 고도의 수사"에 머물러 있다. 일련의 국제선언문과 결의안을 통해서 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지가 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수준에서나 지역수준 그리고 개별 교실수준에서는 지지의 정도가 아직도 상당히 낮은 상태이다. 수많은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고, 실천방안이 수없이 제시되었지만, 실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인권교육을 실천한 사례를 발견하기란 어렵다.16)

그러므로 인권교육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당면

15) 1993년 20여 개의 아시아 지역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기존의 인권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이다.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FORUM-ASIA) & SUARAM-Malaysia, *Curriculum for Continuing Education of Human Rights Activists*(1993) ; 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ARRC), *HRE PACK : Human Rights Education Pack*, 1995, pp. 38-39.

16) David Selby, "Human Rights Edcuation: Education for Democracy, Freedom and Justice", *The New Social Curriculum : A Guide to Cross-curricular Iss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한 장애요소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것은 아직 논란이 형성되고 있진 못하지만 장차 국내의 인권교육이 당면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으로 본다.

인권교육이 당면한 장애요소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앞서 살펴본 인권교육의 개념과 성격에서 연유하는 공통요소는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인권교육은 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인권교육이 중요시하는 '비판적 사고'와 '역사인식'은 단순히 인권에 대한 지식의 습득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권력관계와 사회세력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포함한다.[17]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인권교육은 그것을 반대하는 진영의 두려움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사회 일부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인권침해'라는 묵은 상처를 건드려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구조조정과 불평등한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능력을 획득해야 하는 교육의 현실적 과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교육에 몰두하여 급진적 주장을 재생산해낼 것 같고, 권리를 의식하여 늘상 정부를 상대해 저항할 태세를 갖추는 교육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 같은 불가피한 갈등 속에서 인권교육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비판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인권교육의 옹호자나 반대자나 공통으로 우려하는 문제가 있다. 인권교육의 분석대상이 되는 대개의 인권문제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

17) CEDAL,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the Pedagog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s Education : Towards a Pedagogy of Human Rights Education*, Costa Rica, 1996.

이지 않는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종종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많다. 이런 부정적 요소는 학습자에게 무력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하면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18] 그러므로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의 제공과 구체적 실천방법의 개발을 인권교육은 요구받는다.

셋째, 현실 속의 학교나 사회는 인권의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일방통행의 관계 속에서 인권과 그 가치는 자주 무시되고 학생들 사이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기 쉽다. 방법에 있어서도 강의와 교과서, 활동보다는 말로 이루어지는 지식적 측면의 지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가정, 공장, 사무실 등 사회의 문화 또한 학교상황과 크게 다르거나 나을 바는 없다. 그러므로 인권을 통한 가치 및 태도의 함양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계되는 과제일 수밖에 없다.

넷째,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권리이므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운동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인권운동이 억압적인 정부하에서 탄압받거나, 인적·재정적 취약성을 안고 있거나, 체계적인 인권이론의 수립과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그것은 동시에 인권교육의 장애요소로 떠오를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장애요소 속에서 인권교육은 국제사회가 부여한 광범위한 지지를 실제로는 향유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이 점은 다음에서 살펴볼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18) Ian Lister,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for Education",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of Europe, 1991.

III.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분석

1.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

한국의 인권교육은 국제사회가 지지해온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여러 면에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수용할 만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상과 가치의 자유로운 논쟁과 선택은 흔히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억압되어 왔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기보다 일종의 소유물로 여기는 잠재의식은 아동의 권리라는 말조차 어색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니 권리교육이란 가당치 않은 말일 수 있다. 끝없는 경쟁의 입시장으로 전락한 학교의 모습은 모든 문제를 경제극복으로만 몰아가는 사회분위기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가시화시킨 활동을 발견하긴 어려운 일이다.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인권교육을 뒷받침할 국가 정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구도, 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속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와 시도는 일부 대학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실험과 미미한 흐름에 머물러 있다.

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 인권교육에 대한 공식 제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사하고, 1996년 1월 다음과 같이 인권교육을 실천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19]

-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공무원, 의료전문요원 및 여타 공무원 등에게 권리교육을 반드시 실현할 것.
- '유엔 인권교육 10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의 권리교육 포함을 고려할 것.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는 인권교육을 지지하는 국제적 기준과 약속의 반영이며, 그것을 한국정부에 공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는 기본적인 홍보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에 파급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국제인권기준'이라는 것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이 국제인권장전을 비롯한 주요 조약에 가입한 것은 대개 1990년 이후의 일이었고, 소극적 가입태도와 불충분한 준비과정으로 비판을 받아왔다.[20]

일반 국민에게 이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인권에 관한 기본문서를 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전에도 국제인권기구의 '인권조약 홍보·인권교육'에 대한 권고는 계속 있었지만 결과는 항상 마찬가지였다.[21]

---

1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CRC/C/15/Add.51, para., 21, 1996.

20) 정인섭,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 『인권하루소식 합본』 3호, 인권운동사랑방, 1994.

21) 19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보고서 심의결과, "인권규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권고했다. 또한 1995년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교육과 인권교육의 실시"를, 같은해 11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국제인권법을 교육하고 이를 재판에 적용할 것"을, 1996년 11월 고문방지위원회는 "경찰·검찰 등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나. 인권교육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현재까지 정부의 인권교육 실천 노력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는 정부가 인권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계기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의 인권교육 의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22]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정치·사회 같은 과목에서 아동의 권리를 비롯한 인권관련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아동은 수업과 여타의 과외활동에서 어린이헌장과 청소년헌장을 암송하고 있다. 아동의 존엄성을 각별히 강조하는 것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동이나 성인 모두가 즐기는 휴일인 어린이날(5월 5일)이 초점이 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에 노력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23]

정부의 답변대로 정치·사회 같은 기본 교과목에는 법 질서에 대한 존중, 민주시민의 덕목 등 인권교육의 일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목에는 기본적인 인권문서를 소개조차 하지 않으며, 극히 추상적인 수준의 권리를 전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예로 든 <어린이헌장>과 <청소년헌장>인데 이들 헌장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어떤 강제력도 없다. 국제조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을 제쳐두고 구속력이 없는 선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인권교육 실천 수준을

2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CRC/C. 11/WP. 4, para., 31, 1995.
23) 대한민국 대표단, 「한국정부의 최초 보고서 심사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답변문」, 질문 31에 대한 답변, 제네바, 1996년 1월 18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덧붙여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허위보고를 하였다.

> 한국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1995년 8월에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조약을 아동과 성인에게 똑같이 알리고, 조약의 원칙과 조항에 관해 정책 결정자들뿐 아니라 사회사업가, 의사, 변호사, 판사, 교사, 법집행공무원, 이민국공무원 등의 전문가 집단을 훈련시키는 것 등이다. (중략)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한국 적십자, 유니세프, 연구기관, 대학, 신문사, 아동보호기관 등과 같은 민간단체와 외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와 같은 정부부처로 되어 있다.[24]

그러나 정부가 설립했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이 보고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25] 따라서, 국가위원회 활동에 포함된 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한국정부의 허위보고는 인권교육의 담당기구나 정책이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을 뿐이다.

인권교육의 정책화를 현 정부에 기대해 볼 가능성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에 제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인권법의 제정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권한과 기능을 갖게 될지 분명하지 않지만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정책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대학 내 인권강좌 개설

대학 내에 정규과목으로 인권강좌가 개설되었다는 것은 현재 가시

24) *Ibid.*, 질문 7에 대한 답변.
25) 정부의 허위보고 사실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보고서 심사과정을 줄곧 모니터한 국내 민간단체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대표단의 회의 방청과 '인권하루소식'의 취재에 의해 확인되었다. 『인권하루소식』, 1996년 2월 10일자.

화된 인권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 출발은 1995년 2학기 성공회대학의 <인권과 평화> 강좌이며 곧이어 몇몇 대학에서 '인권'을 명시한 과목이 개설되었다. 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위치에 있는 대학의 이러한 변화는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표 2>는 대학교에 개설된 인권관련 강좌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이다.[26] 이밖에 방송대학교는 TV방송을 통해 <국제인권법의 이해>(1997년, 10회 강좌) 및 <인권의 시대를 연다 :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를 찾아서>(1998년) 편을 제작·방영하였다.

<표 2> 대학 인권교육 현황

대학 / 구분	성공회대	대구대	서강대	광주여전
강좌명	인권과 평화	인권사회학	가톨릭교회의 인권과 정의	법과 인권
강의 목표	• 현대사회의 이념적 혼란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간상 창조 • 이를 위한 가치론적, 윤리적 기초 마련	• 인권개념의 이해 • 인권문제의 실상파악 •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의식 고양 • 인권에 대한 감수성 고양 • 민주·평등사회 건설의지 함양	• 인권침해와 불의적 요소에 대한 비판적 인식 • 인권존중과 정의실현을 위한 지식, 문제의식, 가치관 및 태도 등의 습득과 형성	• 인권개념의 이해 • 국내법 및 국제법 상의 인권에 대한 이해 •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관련 학과	1학년 전교생 (교양필수)	사회학과 2년 (전공선택)	전학과 1·4학년 (교양선택)	사법실무과 2년 (전공선택)
학점	3	3	3	3
내용	• 평화의 개념 • 인권의 개념 • 인권침해사례 • 가정·학교·사회에서의 인권(차별, <유엔 아동권리조약> 등) • 실천방안	• 인권의 개념 및 유형 • 인권의 역사 • 주요 인권선언 • 인권론의 규범적·이념적 기초 • 인권사회학의 이론적 기초 • 인권문제의 유형(제3세계, 서구사회, 동아시아 인권문제에 대한 비교론적 고찰) • 한국 인권문제의 유형과 특징 • 해결모색: 인권기구 및 인권운동	• 인권의 개념 •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 이데올로기와 법 • 가톨릭교회와 인권 • 한국사회의 인권상황 • 인권운동의 과제 • 생명 존중 및 인간화의 실천	• 인권의 개념 • 인권의 역사 • 국제인권법 • 국제인권기구 • 민간단체론
방법	강의·토론·시청각교재 활용·인권관련 활동가 및 피해자 초청·사례분석 및 발표	강의·토론·시청각교재 활용	강의·토론·시청각교재 활용·인권활동가 초청	강의·발표
교재	참고도서 목록 제시	참고도서 목록 제시	『가톨릭교회의 인권과 정의』 묶음	『법과 인권』 (자료묶음집)
개설 연도	1995년 2학기(연2회)	1997년 1학기(연1회)	1997년 1학기(연2회)	1997년 1학기
기타	• 현재 대학 내 '인권과 평화위원회'를 발전시켜 1998년 내에 (가칭) '인권과 평화연구소' 개설계획 • 1999년 '인권과 평화대학원' 신설 계획 • 1998년 1학기 인권강좌 확대 개설(인권과 사회복지, 법과 인권, 지구촌사회와 평화), 1998년 2학기 '민족·인종·평화' 강좌 신설 예정	1학년 과정으로 개설되었으나 교과내용의 난이도로 인해 4학년 과정으로 변경		1998년 전문대에서 광주여대로 승격하면서 학과 폐지로 인해 강좌 폐지됨

26) 김녕, 「"가톨릭교회의 인권과 정의" 강의계획서」, 서강대 1997년도 1·2학기, 98년도 1학기 ; 김영범, 「"인권사회학" 강의계획서」, 대구대 1997년도 제1학기 ; 고병헌, 「"인권과 평화" 수업계획서」, 성공회대 1997년 제2학기 ; 성공회대학교, 『1998년 제1학기 기본교과과정 개설과목 안내서』.

대학 내의 인권교육은 현재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인권의 이론과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수집에 기초하고 있지 못하다. 강의 전담자 중 인권분야의 전공자가 없으

며, 인권관련 연구소를 갖춘 대학도 없다. 둘째, 따라서 체계적인 교재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셋째, 방법면에서 대규모 수강인원과 강의라는 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천활동의 기회제공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인권교육 강좌를 최초로 개설한 성공회대학교의 1회 강좌평가에서도 발견된다.[27]

라. 인권교육과 관계된 민간단체 활동

인권 및 사회 여러 부문의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교육'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의 Ⅱ. 인권교육의 개념과 성격에서 살펴본 인권교육의 범주에 드는 특화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단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아래의 몇몇 활동의 예에서 관찰되듯, 각 단

27) 문진영, 「성공회대 개설 <인권과 평화>에 대한 소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 인권교육실무자를 위한 2차 워크샵 토론자료』(1995년 11월). 여기서 제기된 대학의 정규과목으로서 인권교육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의 이론화(개념화)의 문제 : 인권이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라는 규범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교과목으로 운영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인권의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논리체계로 묶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기는 어렵다.

• 수강대상의 문제 : 교육대상인 일반학생이 인권의 소중함을 스스로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인권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야 한다.

• 학습효과와 평가의 문제 : 정규교과목으로 수강하였을 때 명백한 학습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이를 변별력 있는 기제(시험 또는 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단시일 내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적어도 성실히 수강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학습효과의 차이가 생기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어렵다.

체의 활동은 '단절'되어 있을 뿐 '연계'가 없다. 인권교육의 철학과 방법에 대하여 한국사회에 집합적인 문제제기를 해낼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1)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인권·교육·아동 관련 21개 단체가 1995년 3월 결성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28]는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 조약 이행에 관한 민간보고서>를 통해 "학생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타당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갖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하였다. 이것은 민간부분에서 처음으로 집합적으로 표출된 인권교육의 요구였다.

연대회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관련 회의 참가와 모니터, 주요언론 보도와 출판작업을 통한 아동권리 홍보, 유엔권고안 이후의 정부이행사항 1차 모니터 등의 사업을 1995년 결성 때부터 1997년 5월까지 벌였다. 연대회의의 이 같은 활동은 아동의 '권리'문제를 제기했다는 데서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적으로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은 양심수 문제에서만 아니라 인

28) 소속단체는 다음과 같다 : 공동육아연구회, 또하나의 문화 교육소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스러기선교회,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서울평화교육센터, 성폭력상담소, 세계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 어린이도서연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물꼬,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한국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권교육 부분의 연구와 실천에 있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부의 인권교육 활동은 1994년부터 매년 1회 진행된 전국교육대회를 통한 회원대상 교육에 제한되어 왔다.[29] 한국지부의 인권교육 활동에서 특기할 사항은 1995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인권교육실무자를 위한 워크숍'의 개최를 통해 국내 인권교육 네트워크 결성을 시도한 점이다.[30]

참석한 단체간의 부족한 자원과 빈약한 실천을 확인한 것으로 끝난 이 워크숍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인권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고 따라서 이를 전담할 인적 자원과 재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31]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네트워크 결성에 힘을 모을 수 없었다. 이후 1996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나 1997년 한국교육문제연구소가 시도한 인권교육 실무자간의 연계노력이 일회성 논의로 그치거나 흐지부지된 것도 이러한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32] 현재로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유지할 동력이 발견되지 않는다.

(3)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은 창립 때부터 인권교육을 명확한 활동영역으로 명시한 단체이고, 인권·사회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권교육 전담자를 두고 있다. 1993년부터 진행된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요 인권교육 활동은 <인권활동가를 위한 전문가세미나>(13회), <인권활동가를 위한 공개강

2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95·96·97년도 전국교육대회 자료집』;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 일본 인권교육 프로그램 참여" 관련 문건, 1994.

3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실무자를 위한 워크숍 보고서』, 1995.

31) 워크숍 참여단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사회교육원, 인권운동사랑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다. 2회 때는 성공회대학교 인권강좌 담당교수가 참석하였다.

3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권교육 책임자 간담회 보고서』, 1996.

좌>(1, 2차 총 35회),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의 인권교육>(30여 회),[33] 대중의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한 인권영화제 개최 등이다. 특히, 1995년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결성을 제안·주도하면서 아동의 권리와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확산시켰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교육 활동의 특징은 방법론에 있다. 게임, 토론, 사례분석 및 실천활동이 주로 이용되며 강의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은 인권운동사랑방 내부에서 수용가능한 소집단을 대상으로 실천되고 있을 뿐 외부에 파급효과를 끼치지는 못하고 있다.

(4)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연대는 1995년 하반기부터 '참여사회아카데미'의 정기 개설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시민교육을 실천해왔다. 사회복지학교 등을 통해 '사회권'의 문제를 제기한 점, 1997년 '평화가족만들기'라는 캠페인 제하에 아동권리 교육을 위한 교재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의 제작,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어머니 교육'을 실시한 점이 인권교육에 있어서 특기할 점이다.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폭넓은 강사층과 실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5) 평화교육연구모임

'평화교육'은 '국제이해교육'과 더불어 인권교육의 또 다른 이름이다. 1995년 2월, 대학교수, 변호사 및 현장 교사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평화교육연구모임'은 포괄적인 학교교육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실단위의 실천을 전제

33)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제 1·2기 인권운동사랑방 공개강좌 자료집』, 1995.

로 '교실 속의 평화공존'이라는 평화교육의 모형개발과 실천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왔다.[34] 1997년 9월 국내에서 열린 한·일 평화교육 심포지엄과 1998년 1월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평화교육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경험을 교류하여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에서의 평화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평화교육'이라는 구체적 개념틀 속에 묶인 연구모임이라는 것이 특기할 점이다.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과모임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교육현장에 '참교육'이라는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나 출범과 함께 107명의 관련교사가 구속되고 1,500여 명의 참여교사가 강제해직되는 등 온갖 수난을 겪어왔다. 현재 1만 5천여 명의 조합원과 시·도 지부 및 시·군·구 지회 산하에 1천여 개에 달하는 학교단위의 분회가 조직되어 있는 전교조는 교육개혁의 내용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주체라 볼 수 있다.[35]

그러나 전교조가 제기한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 인권교육과 어떤 관련을 갖고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나 전망은 발견되지 않는다. 일례로 전교조 내 '사회·윤리 교사모임', '도덕교사 모임', '통일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등이 진행해온 교과서 내용분석 및 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36] 이들 분석에는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

34) 정용민, 「교실 속의 공존-다양한 아이들이 어떻게 교실에서 더불어 공존할 수 있을까?」, 『한일 평화교육 세미나 자료집』, 1997, p. 206.

35) 『한겨레신문』, 1998년 2월 7일자, p. 22.

36) 도덕·윤리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함께하는 도덕교육』, 푸른나무, 1989 ; 박성구, 「사회과와 평화교육」, 사회교사모임, 『사회교육』, 푸른나무, 1991 ;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준), 『직녀에게』, 5호, 1996 ;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지역교사모임(준), 『직녀에게』 7호, 1997.

와 방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일부 교사가 '평화교육'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기조는 아니다.

마. 유엔기구의 한국위원회

유엔의 인권교육 이행과 밀접히 관련된 전문기구는 유네스코와 유니세프다. 이들 기구의 한국위원회가 하는 활동은 방대하다. 그 중에서 인권교육 부분에 기여해온 주요활동은 유엔 인권교육 이념의 전파이며, 구체적으로는 유엔의 각종 선언과 교재번역 및 배포에 일조하였다.

일례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1995년 <유엔 아동권리조약>에 관한 교사용 지침서를 2만권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다.[37] 그러나, 한 학교에 기껏해야 1-2권 보급되었을 그 지침서가 실제로 어떤 교사의 손에 들어가 얼마만큼 활용되었을지에 대해 큰 기대를 갖긴 어렵다. 정부의 분명한 의지 아래 조직화된 광범위한 배포와 이용 없이는 이들 기구의 노력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1953년부터 추진해온 '유네스코 협동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유네스코 협동학교에서 권장되는 교육활동 주제는 유엔의 역할에 대한 교육, 인권교육,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교육 및 환경교육으로 대별된다. 1997년 현재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23개교, 대학 4개교 총 53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풍토에 놓여 있고 학교에서 교사의 자율성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교육주제

37)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1995.

가 자리잡을 여지가 많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협동학교 대부분이 국·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잦은 교사이동으로 지속성을 갖기 힘들고,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갖기 어렵다.38)

유네스코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활동은 유엔 차원의 인권교육 활동의 전달자이자 국내 이행 촉진을 위한 '협력' 차원의 것이지, 그것이 주도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본다. 국내에서 인권교육을 주창하는 광범위한 개인과 집단이 형성되어 적극적인 협력을 시도할 때에야만 두 기구의 노력이 효과적일 수 있고,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바. 인권교육 관련 출판현황

<표 3>에서 나타나듯이 포괄적인 인권교육 관련 개념서 및 실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침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비매품인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구해보기가 어렵다. 기본적인 유엔의 선언이나 조약에 대한 광범위한 배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3> 인권교육 관련 출판현황

제목	저자 또는 펴낸곳 (비매품:비/번역서:역 /자료집: 자)	발행 연도	인권 일반	인권 교육 이론	인권 교육 방법론	교사용 지침서	인권 실태	국제 조약·국내법
국제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한국위	'96		○		○		
학교에서의 '세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역)	'97		○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비)	'97		○		○		
관용: 평화의 시작	유네스코한국위	'95		○		○		
인권이란 무엇인가	〃	'95	○					○
평화를 위한 선언	〃	'93	○					○
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한국위(비)	'97		○		○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유니세프(비)	'95			○	○		○
세계 아동 현황보고서	〃	'95					○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97					○	○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참여연대(비)	'97			○			○
우리말로 살려놓은 민주주의	이오덕	'97						○
생활법률 이해활동	한국청소년연구원(비)	'95					○	○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	'92					○	○
인권교육의 기법	〃 (역)	'97			○			
청소년인권보고서	한국청소년연구원	'97		○			○	○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데이비드 힉스(역)	'93		○	○			
인권교육자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비)	'93	○				○	○
유엔과 인권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국제인권봉사회(자)	'94	○					○
가톨릭교회의 인권과 정의	서강대(자)	'97	○				○	○
법과 인권	인권운동사랑방(자)	'97	○					○
유엔과 인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83						○
인권이란 무엇인가	〃	'88	○					○
유엔세계인권대회 자료집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자)	'94					○	○
한일 평화교육	한신대 민중교육연구소·평화연구소(자)	'97		○	○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자)	'95	○				○	○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공개강좌 자료집	〃 (자)	'95	○				○	○
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 (자)	'96	○					○
아동권리의 현황과 이해	한국아동권리학회(자)	'97	○					○
아동권리연구(창간호)	〃	'97	○					○

38) 강순원, 「한국 평화교육의 성격과 그 실체」, 『한일 평화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1997.

2. 분석과 평가

앞서 살펴본 국내 인권교육 현황을 분석·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인권교육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논문 중에서 '인권교육'에 관해 다룬 국내 석·박사 논문은 단 한편도 없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권고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유엔인권교육 10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에 의미를 부여한 가시적인 활동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만이 아니라 인권·사회 및 교육관련 민간단체, 교원노조,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 모두 해당된다.

▪ 인권교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책임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인권교육활동에 해당하는 인권교육의 실행을 위한 목표와 내용 설정, 우선순위의 선정 및 일정, 재정·인적 자원의 할당, 인권교육을 위한 국내 및 국제조직간의 상호협력이 전무하다.

▪ 정부는 유엔이 몇차례에 걸쳐 권고한 '인권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의무를 계속 방기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번역하여 국민 대중에게 배포하는 일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수많은 정부 활동 홍보용 문건과 지침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이다. 문제는 정부가 그것에 대해 알릴 필요성과 의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 인권교육을 위한 어떤 시도에서도 인권교육이 시급한 최우선 집단에 대한 고려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되는 집단은 유엔의 각종 선언문과 권고에서 확인되었듯이 '군대, 법집행요원, 경찰, 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의료전문요원 및 여타 공무원' 등이다.

▪ 인권교육 실천 주체간에 협력과 연대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몇차례의 네트워크 건설 시도는 중단되었거나 실험에 그쳤다. 따라서, 인권교육에 대하여 정부와 사회를 대상으로 집합적인 문제제기를 할 중심단위가 조직되지 못했다.

▪ 인권교육 실천 주체간의 결속력의 부재로 인권교육의 논의와 활동에 당연히 참여해야 될 대상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논의에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며, 교사·인권운동가·전문직 종사자·연구자 등의 광범위한 결합이 요구된다.

▪ 인권교육 활동에서 얻어지는 지식, 정보 및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인권교육 관련자료의 발간여부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구나 선행 실천자들과의 교류와 협력이 미미하다. 일부 단체가 인권교육 또는 평화교육 관련 국제 워크숍에 참가하고 연수받은 경험이 있을 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 참여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재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실천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기존의 강의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참여적 프로그램을 소개한 자료도 빈약하다. 따라서 현재 실천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지식의 전달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나마도 필수적인 교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 인적 자원이 빈약하다. 대학교육을 일례로 들 때, 정치학·사회학·법학 전공자가 강좌를 담당하고 있으며 성공회대만이 평화교육 전공자이다. 인권단체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을 제외하고는 인권교육 전

담자가 없으며, 전교조와 같은 교원노조에도 인권교육 전담자는 없다. 대부분의 민간단체에 일반적인 교육담당자가 있을 뿐으로 인권교육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주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인권교육 활동가를 발굴하고 훈련할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 인권교육 영역에서 인권단체의 기여가 거의 없다. 인권단체에서 인권교육을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인권보장이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획득·유지해야 할 귀중한 가치라는 인식을 국민대중에게 뿌리내리는 데 인권단체가 기여해왔다면, 이제는 권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내용 있는 인식이 대중 사이에 공유되도록 인권교육을 전략으로 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인권교육이 당면한 현실과 장애요소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인권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국제적인 선언문이나 조약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수용할 사회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수용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실현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인권교육의 쟁점을 조성할 근거를 발견해야 한다. 인권교육의 실천주체들이 간과한 부분을 다음의 두가지 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정교과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들 수 있다.

학교교육의 목표와 가치가 공식적으로 표현된 일차적인 도구는 교과서이다. 특히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학교에서 무엇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39]

39) 현재 국가에서 정한 교과서 이외에는 수업중 타 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현 국가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로써 학생대중의 의식을 일정한 방향으로 통제·조정하는데 봉사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 개정요구는 계속되어 왔다. 1989년 남기정 교사는 국정교과서 문제가 교육법 제157조와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그러므로 '교과서의 저자는 사회의 각 영역을 대표하고 있는가, 교과서는 어떤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교과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 예는 국내 인권교육 분야에서 거의 부재하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의 지식과 가치가 얼마나 수용되어 있는지를 가늠할 도구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40]

둘째, 교육현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처해 있는 인권상황을 수집·분석한 지표가 없다. 이러한 지표는 가장 취약한 범주에 속하는 집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나 인권교육이 다뤄야 할 영역과 문제제기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IV. 결 론 : 한국 인권교육의 당면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교육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되어 1994년 '유엔인권교육 10년'의 선포에 이르기까지 유엔 및 국제적, 지역적 차원의 인권기구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인권교육의 개념은 확장·발전되었고 구체적인 실천지침이 개발되었다.

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수학권(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1992.11.12. 89헌마88. 전원재판부).

40) 국내에서 교과서 분석을 시도한 예는 1996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국제이해'의 관점에서 분석한 경우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과서 분석을 시도한 예(1989년 전교조 도덕·사회교과 등)는 있었지만 인권교육의 가치와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 인권을 위한 기술, 인권을 통한 가치'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그것이 기반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관계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을 인권의 원칙에 부합되게 재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주입식 방법으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추구한다. 결론적으로 인권교육은 사람들이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이 존중받고 수호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는 지점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것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국제사회가 그것에 부여한 광범위한 지지를 실제로는 향유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성격을 가진 인권교육은 그것에 반대하는 진영의 두려움과 저항에 항상 직면한다. 또한 인권의 문화와 거리가 먼 학교와 사회환경은 인권의 가치체험을 방해하고 있다.

한국의 인권교육 현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상과 가치의 자유로운 논쟁과 선택을 가로막아온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교육독점, 그리고 최근의 국제구제금융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인권교육이 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 속에서 국제기구의 권고는 계속 무시되었고, 인권교육의 국가책임은 방기되어 왔다. 또한 일부 대학과 민간단체에서 시작된 인권교육의 실천은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법을 전체 사회에 제기하고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새 정부 임기중에 실현 가능한 인권개념의 정책화와 기구설립을 계기로 한국의 인권교육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이 속에서 인권교육 주창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고찰 속에서 한국 인권교육의 당면과제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유엔인권교육 10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과 타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활동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유엔의 국가행동 계획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 단계별 실천활동과 참여주체가 명기되어 있다.

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에 제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 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만 거론되었을 뿐 그것의 권한과 기능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므로 민간단체의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과제는 인권교육 주체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교육·노동·종교단체들의 이해와 연대를 이끌어내야 실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 조약> 등 기본적인 문서가 홍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외무부 등이 발행하여 관련부처에 소량 배포해온 차원을 넘어서서 대국민 홍보용으로 발행되는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이를 홍보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과제이며, 공익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인권선언과 조약의 홍보에 있어 대중매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자 세계인권의 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프로그램 편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셋째, 인권교육이 시급한 최우선 집단에 대한 고려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집단은 군대, 법집행요원, 경찰, 교사, 사회사업

가, 판사, 의료전문요원 및 여타 공무원이다.

이들 집단은 국민의 인권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 있고, 크고 작은 인권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인권교육의 우선 대상자로 지목되었으나, 어떤 내용이 그들에 대한 훈련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제시된 바가 없다.

유엔의 「법집행 공무원 윤리강령」,[41] 전문가훈련시리즈[42] 등에 표현된 기준을 적극 발굴하여 국내 현안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권관련 법과 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이 포함되겠지만, 일반 국민과 대면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금세 떠올리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항목을 개발해야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권교육의 연구단위가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성공회대학의 '인권과 평화위원회'가 올해 안에 '인권과 평화연구소'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이밖에도 인권강좌를 개설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단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단위는 한국아동권리학회나 평화교육연구모임 등 기존 연구집단과 민간단체와의 체계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연구과제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분석, 인권관련 교과목 및 프로그램의 개발, 국내·외의 선행경험 분석 및 소개 등이다.

41) 유엔총회결의안 34/169(1979). 이 밖에도 「수인처우의 최저기준」(1977), 「수인처우의 기본원칙」(1990), 「모든 형태의 구금자 보호를 위한 원칙」(1988), 「비행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준」(1990) 등 다수의 기준이 존재한다.

42) 유엔이 1994년부터 발행한 전문가 시리즈에는 『인권과 사회사업』, 『인권과 선거』, 『인권과 미결수』, 『국가인권기구』, 『인권과 법집행』이 있다. 경찰, 공무원, 사회사업가, 국가정보기구 요원 등이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원칙이 담겨 있다.

다섯째, 구체적인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단위간에 협력과 연대가 성숙되어야 한다. 각각의 활동에서 얻어진 지식, 정보, 기술 및 자료를 모아 공유하는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주체에 일임하여 공동의 자료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실험교실을 개최할 수 있다. 실험교실에서는 각 주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연구모임과 실천단위 공동의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이들 과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인권교육 논의의 중심단위를 조직해야 한다.
- 인권교육 주체를 발굴·확대해야 한다. 학생, 학부모, 인권운동가 및 전문직 종사자가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 어린이, 청소년 및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정주제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청소년인권백서 등의 형식으로 종합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5년마다 이루어지는 <유엔 아동권리조약> 이행에 관한 민간단체보고서 작성 등 민간보고서 사업에 각 부문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기구의 논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사업이 세계적으로 계획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교육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비디오를 수집하여 소규모 영화제를 열 수 있다. 주말학교, 여름·겨울캠프 등을 통해 실험교실을 공동으로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각 부문의 진전정도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평가기제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 평가는 민간의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 계획이 실현된다면 정부의 활동과제와 이행정도를 공동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 인권교육의 단계별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 이상의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일정 및 인적·물적 자원 동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곱째, 인권단체의 기여가 요구된다. 그 동안 국내·외 인권활동에서 얻은 정보와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인권교육 분야에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실천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인권단체의 과제가 있다. 일부 대학에서 시작된 인권강좌와 짝을 이루어 학생들이 현실 속의 인권활동에 참여하여 지식과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보조적인 일손을 구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강순원, 「한국 평화교육의 성격과 실제」, 『한일 평화교육 세미나 자료집』, 1997.

강환국, 「학교교육과정에서의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국제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정민사, 1996.

고려대학교 교육사철학연구회 편, 『새로운 교육의 탐색』, 내일을 여는 책, 1997.

고병헌, 「교육개혁운동으로서의 대안교육운동」, 『처음처럼』, 1997년 11-12월 호 통권 제4호, 내일을 여는 책, 1997.

고병헌, 성공회대 1997년 제2학기 "인권과 평화" 수업계획서, 1997.

『광주여전 "법과 인권" 강좌 자료묶음집』,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1997.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1992.11.12. 89헌마88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판례집』, 제4권.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1992.6.30)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해설"』, 1997.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1992.10.30)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1995.

교육부,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초등학교 교육과정』, 1996.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유엔과 인권』, 분도, 198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995·96·97년도 전국교육대회 자료집』.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 일본 인권교육 프로그램 참여" 관련 문건, 199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실무자를 위한 워크숍 보고서』, 1995.

김녕, 「"가톨릭교회의 인권과 정의" 강의계획서」, 서강대 1997년도 제1·2학기, 1998년도 1학기.

김영범, 「"인권사회학" 강의계획서」, 대구대 1997년도 제1학기.

김현덕, 「국제이해교육의 내용과 방법」,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기획, 『국제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정민사, 1996.

대한민국 대표단, 「한국정부의 최초 보고서 심사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답변문」, 제네바, 1996년 1월 18일.

데이비드 힉스 저, 고병헌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원, 1993.

도덕·윤리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함께하는 도덕교육』, 푸른나무, 1989.

문진영, 「성공회대 개설 <인권과 평화>에 대한 소개」, 국제앰네스티 주최 인권교육실무자를 위한 2차 워크숍 토론자료(1995년 11월 10-11일).

박성구, 「사회과와 평화교육」, 사회교사모임, 『사회교육』, 푸른나무, 1991.

서강대, 『"가톨릭교회의 인권과 정의" 강좌 자료묶음집』, 1997.

성공회대학교, 『1998년 제1학기 기본교과과정 개설과목 안내서』, 1998.

스기하라 야스오 지음, 석인선 옮김, 『인권의 역사』, 한울, 1995.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아이들의 약속, 세계의 약속』, 내일을 여는 책, 199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백운선 옮김, 『평화를 위한 국제선언』, 오름, 199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199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 오름, 199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권교육 책임자 간담회 보고서』, 199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오름, 1995.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어린이는 어떤 권리를 가졌을까요?』, 1995.
유엔인권센터 엮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옮김, 『인권교육의 이론과 실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제 1·2기 인권운동사랑방 공개강좌 자료집』, 1995.
정용민, 「교실 속의 공존-다양한 아이들이 어떻게 교실에서 더불어 공존할 수 있을까?」, 한일 평화교육세미나 자료집, 1997.
정유성, 『대안 교육이란 무엇인가』, 내일을 여는 책, 1997.
정인섭,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 『인권하루소식 합본』 3호, 인권운동사랑방, 199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1997.
케네스 타이 편저, 김현덕 역, 『학교에서의 '세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1997.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 준., 『직녀에게』, 5호, 1996.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지역교사모임, 준., 『직녀에게』, 7호, 1997.
한국아동권리학회, 1997년도 창립개념 학술대회 자료집, 『아동권리의 현황과 이해』, 1997.
한국인권단체협의회·국제인권봉사회, 『유엔과 인권』, 1994.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 인권보고서』, 인간과 복지, 1997.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이용교·이희길 옮김 『인권교육의 기법』, 인간과 복지, 1997.
한국청소년연구원, 『생활법률이해활동』, 1995.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1992.

Amnesty International-Education for Freedom, *Shopping List of Techniques in Teaching Human Right*, 1994.
Amnesty International, *Our World Our Rights*, London, 1996.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FORUM-ASIA) & SUARAM-Malaysia, *Curriculum for Continuing Education of Human Rights Activists*, 1993.
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ARRC), *HRE PACK : Human Rights Education Pack*, 1995, pp. 38-39.
CEDAL,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the Pedagog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s Education: Towards a Pedagogy of Human Rights Education*, Costa Rica, 1996.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No. *R, 85.7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f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in Schools*, Strasbourg, 14 May 1985.
DEED, *Summing Up the World*, 1993.
David Selby, "Human Rights Edcuation : Education for Democracy, Freedom and Justice", *The New Social Curriculum : A guide to Cross-curricular Iss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Development Education Centre, *What do you think you're playing at?*, 1993.
Dieter Misgeld, "Human Rights and Education : Conclusions from some Latin American Experiences", *Jouranal of Moral Education*, Vol. 23, No. 3, 1994.
Ian Lister,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for Education",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of Europe, 1991.
Oxfam, *Making Peace : Teaching about C'flict and Reconciliation at Key Stage 3 and 4*, 1997.
Peace Education Project, *Let's Cooperate*, 1991.
Save the Children, *It's Our Right*, 1990.
Save the Children, *Keep Us Safe*, 1990.

Sharon Detrick,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The 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ARRC), *Human Rights Education : A Survey of Ongoing Initiativ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ailand, 1995.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einna, 25 June 1993.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15/Add.51, 1996.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 11/WP.4, 1995.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4/25,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 November 1989.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No. 49/184, 23 December 1994.

UN General Assembly, A/51/506/Add.1., 12 December 1996.

UN General Assembly, A/52/469/Add.1., 20 October 1997.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 A(III),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0 December 1948.

UN, *ABC Teaching Human Rights : Practical Activitie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1989.

UN, *United Nations Ac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Geneva, 1994.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 November 1974.

UNESCO,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7.

Unicef, *Education for Development : A Teacher's Resource for Global Learning*, 1995.

WWF, *Educating for the Future : A Practical Classroom Guide*, 1994.

심사평

현실성과 실천성을 토대로 한 인권논문들을 심사하면서

민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정한 <인권논문상> 공모에 응한 논문은 모두 14편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논문을 읽고 예심과 본심의 두 단계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논문상 공모가 첫 행사인 만큼 어떤 논문이 얼마나 응모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따라서 사전에 정해진 심사원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14편이나 되는 논문이, 다양한 집필자로부터 들어왔고, 그 내용도 인권문제의 주요 관심사를 두루 포함하고 있어서 주최측으로서도 고무적이었고, 우리 심사위원들도 그 글을 읽는 기쁨이 적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일단 논문을 통독한 다음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인권논문상은 순수한 학술논문을 지향하기보다는 현실성과 실천성의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인권이란 주제의 성격으로 보나 민변이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보나 현실성과 실천성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순전히 이론적 작품이거나 일반론에 가까운 논문을 일단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학의 학위논문들이 제외되었는데, 거기에는 '인권'논문으로서의 질적 평가가 병행되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5편의 논문들 중 1편을 제외하고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연계된 작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논문의 '소재'와 '자료'를 운동과정에서 만들어내면서 그 성과를 이론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이 글들은 한국상황에서 '인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열정 및 자료와 접근방법에서 신선함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의 참여자들이 낸 논문 중 상당수가 '이론화'와 '설득력'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홍석만·이준구의 논문은 통합전자주민카드라는 현실적 문제를 국가의 감시통제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분석과정에서 생경한 부분이 잘 소화되어 하나의 완성된 글로서 전달력이 높았습니다.

우수상으로 뽑힌 맹지연의 논문은 환경운동연합의 체험을 살려, 골프장건설을 둘러싼 법적분쟁 사례의 분석과 그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이 지닌 문제점, 판결과정에서의 주민이익의 배제 등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추출해낸 성과가 돋보였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이론화하는 단계에서 미진함이 있어 최우수작이 못되어 아쉽습니다. 또 다른 우수작인 김정진의 논문은 우리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제한장치를 수집해낸 점이 좋다는 지적과, 더욱 구체적인 주제를 잡아 세밀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나열식이 되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장려상으로 뽑힌 김수경·류은숙의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인 인권교육의 과제와 구체적 방법의 시안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돋보였으나 '논문'으로서는 다소 피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정유진의 논문은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풍부한 정보와 자료를 동원한 점이 좋았지만, 역시 '논문'으로서의 가공이 부족하여 장려상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일단 완료한 후 개별 논문에서 조금이라도 표절이나 적절하지 못한 인용이 있는지 몇몇 분들에게 개별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논문이 다소간 부적절한 표현, 오기, 문장구성에서

소홀한 점들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때문에 필자들에게 당선사실을 통고하면서 문장과 표현을 엄밀하게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집필자들은 성실하게 그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첫 논문상을 심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견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1. 앞으로도 인권논문상을 민변의 연례사업으로 할 것, 다만 올해는 10주년이어서 매우 많은 논문이 응모되었다고 느껴지기에 다음 해부터는 그 규모를 다소 축소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2. 민변의 인권논문은 우리 현실에서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고민, 성찰한 결과를 기대하므로 순수한 학문지향의 논문은 본 상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성의 요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3.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자신들의 체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이론화·논문화하는 작업은 매우 권장되어야 할 것이며, 민변의 논문상은 그것을 장려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으며 시민단체의 참여자는 논문을 작성하려고 할 때는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 등 연구자와 함께 작성한다면 더욱 우수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주최측은 이러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인권논문상>의 응모요령에 포함시키고 <인권논문상>이 그 권위를 더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사위원 : 유현석(변호사) 한상범 (동국대 교수) 정종섭 (건국대 교수, 변호사)
유중원(변호사) 한인섭 (서울대 교수)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 수상작품집

발행일 • 초판 1쇄 1998년 7월 15일
발행인 • 최영도
발행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522-7284 팩스 522-7285
등록 제 22-1146호(1997. 5. 23.)
천리안 민변 하이텔 minbyun7
값 6,000 원

ISBN 89-87761-06-1 0334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간 도서 및 자료

■ 잡지

무크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3. 1.~1995. 12.(통권 제5호까지 발간)

월간지 『이달의 민변』 / 1996. 8.~1997. 12.

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1998. 1.~1998. 5.

■ 단행본

반민주악법개폐에 관한 의견서 / 1989. 2. 28.

한국인권의 실상 / 1992. 7. 10.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 -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논리를 반박한다 / 1996. 12. 30.

새노동법 해설 - 초판 / 1997. 4. 21.

1996 노동판례비평 / 1997. 6. 30.

12.12, 5.18 판결평석집 / 1997. 7. 28.

새노동법 해설 - 수정증보판 / 1997. 9. 1.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Ⅰ- 근로기준법 / 1998. 4. 10.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위원회법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1998. 6. 30.

■ 자료집

변론자료집 Ⅰ/ 1991. 5. 25.

제2회 아시아 태평양법률가회의 민변 참가단 보고서 / 1991. 9. 25.~30. / 동경

제3차 고문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보고서 - 건강, 정치적 억압 및 인권 / 1991. 11. 25.~29. / 칠레

변론매뉴얼 / 1996. 9. 20.

한총련 변론지침서 / 1996. 10. 10.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 / 1996. 11. 2.~3. / 서울

제2회 한일법률가교류회 / 1994. 3. 27~28 / 오사카, 고베

■ 영문자료집

Human Rights in South Korea / May 1992

Human Rights and Japanese War Responsibility / Oct. 1993

The National Security Law: Instrument of Political Repression in South Korea by KOHRNET / 1993 first print, 1995 second pri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South Korea / Apr. 1995

NGOs' Counter-Report to the Repor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Oct. 1996

The New World Order and Human Rights in the post-Cold War Era / Nov. 1996

Supplementary Report to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on the Rights of the Child / July 1997